
제2023-1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별첨자료

2023. 2. 21.

심의안건 별첨자료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제165조제1항 중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을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제1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한다.

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

제16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

제16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제1항 중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 2.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u> 2. <u>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 설></u> 2. <u><신 설></u> 3. <u><신 설></u> 4. <u><신 설></u> 3. <u>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4. <u>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 5. <u>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6. <u>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u> 7.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u> 2. <u>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2. <u>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 3. <u>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4. <u>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u> 3.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 4. <u><삭 제></u> 5. <u><삭 제></u> 6. <u><삭 제></u>

<p>제167조(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u>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 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u> 4.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 설> 2. <신 설> 5. <신 설> 	<p>7. <삭 제></p> <p>제167조(심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u>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 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u> 4. <u>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u> 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u> 5.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u>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u>

<p>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u>제1항</u>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결산</u>을 사전심의한다.</p> <p>4. <u>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u>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u>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u></p>	<p>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p> <p>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 및 결산</u>을 사전심의한다.</p> <p>4. <삭 제></p>
--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심의 원칙과 회계 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복잡하고 경직된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안 심의로 바꾸기 위함. 현행 회계 분기는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이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로 되어 있어 그 일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폭이 큼.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하여 회계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기존 2분기·3분기, 4분기, 1분기 주기로 1년에 3번 심의하던 예산을 상반기(2분기·3분기), 하반기(4분기·1분기)로 1년에 2번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 심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기구 및 재정 등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 2. <u>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u>
목적 및 경위	<p>1. 본회 회칙 작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p> <p>가. 본회 회칙에서 의결기구의 권한과 그 권한에 따라 본회 산하기구가 집행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2장에 의결기구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 본회 산하기구가 집행하는 사항 또한 그 산하기구의 업무와 권한 등이 규정된 장에 관련 조항이 있음.</p> <p>예를 들어, 학생회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된 권한에 관하여서는 그 권한에 따라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중략)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p>

	<p>'전학대회는 (중략)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학생회칙 제90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p> <p>학생회칙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된 권한에 관하여서는 그 권한에 따라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01조제2항 등에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음.</p> <p>나. 학생회칙 제168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학생회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p> <p>따라서 학생회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p> <p>2.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p> <p>학생회칙 제168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은 명확하며 이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학생회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전심의가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불명확하게 만듦.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p>
--	---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u>로 한다.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3. 1분기: <u>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4. 2분기: <u>봄학기 개강일부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 5. 3분기: <u>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p>제165조(회계연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익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u>로 한다.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분기: <u>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2. 2분기: <u>봄학기 개강일부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u> 3. 3분기: <u>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u> 4. 4분기: <u>가을학기 개강일부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u>
---	--

<p>6. <u>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u></p> <p>7.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p>	<p>3. <u>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u></p> <p>4. <삭 제></p> <p>5. <삭 제></p> <p>6. <삭 제></p> <p>7. <삭 제></p>
<p>목적 및 경위</p>	<p>1. 회계 분기 기준의 명확성을 높여 회계 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p> <p>현행 회계 분기는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이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로 되어 있어 그 일자를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폭이 큼.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이므로 가을학기 종강 전이 될 수도 있는 등 명확성이나 체계성이 떨어짐. 이에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하여 회계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p>

<p>제167조(심의 원칙)</p> <p>1. <u>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p> <p>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p> <p>3. <u>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p> <p>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p> <p>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u></p>	<p>제167조(심의 원칙)</p> <p>1. <u>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u></p> <p>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p> <p>3. <u>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p> <p>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u></p> <p>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u></p> <p>4. <u>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u></p> <p>1. <u>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u></p> <p>2. <u>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u></p> <p>5.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p>
---	---

<p>4. <u>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u></p> <p>1. <신 설></p> <p>2. <신 설></p> <p>5. <신 설></p>	
<p>목적 및 경위</p>	<p>1.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통일</p> <p>가. 가운데점의 사용례 및 해석례</p> <p>1) 가운데점은 ①단어를 열거할 때, ②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③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 ④업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를 연결할 때 사용함(“법령에 있어서, 가운데점(·)과 반점(·)의 차이”. 법제처 법제 Q&A, 2009. 6. 15.)</p> <p>2) 가운데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데점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데점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임.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정부입법지원센터, 2015. 3. 27.)</p> <p>3) 이처럼 유사한 사항을 열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운데점은 사용과 해석에서 명확성을 저해함.</p> <p>나. '예산안 그리고 결산'이라는 조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운데점을 사용한 '예산안·결산'에서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하고자 함.</p> <p>2.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심의 원칙 개편</p> <p>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은 직전 반기 결산과 해당 반기 예산안을 함께(병합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 이는 학생회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충돌하여 모순이 되기도 함. 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의를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법리적 근거는 없으며, 정부 기관, 타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도 예산안 및 결산을 각각 심의함. 법리적 이유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원칙을 예산안 및 결산을 각각 심의하는 원칙으로 변경하고자 함.</p> <p>3. 예산안 및 결산을 연 3회 심의하여야 하는 심의 원칙 개편</p> <p>기존 2분기·3분기, 4분기, 1분기 주기로 1년에 3번 심의하던 예산을 상반기(2분기·3분기), 하반기(4분기·1분기)로 1년에 2번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 심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p> <p>즉, 심의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 심의 주기를 상반기, 4분기, 1분기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변경함.</p>

	<p>기존 하반기(4분기·1분기)를 4분기와 1분기로 나누어 1년에 3번 예산을 심의하던 이유는 11월 총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학생회장 당선인이 1분기(겨울학기) 동안 진행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기존 심의 원칙의 목적과 취지는 개정된 학생회칙 제170조를 활용하여 유지되고 달성될 수 있음.</p>
--	--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u>제1항</u>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결산</u>을 사전심의한다. 4. <u>사전심의를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u>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p>제168조(사전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u>예산안 및 결산</u>을 전학대회 심의 전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u>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라 제출된 <u>예산안 및 결산</u>을 사전심의한다. 4. <삭 제>
--	--

<p>목적 및 경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안·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통일 '예산안 그리고 결산'이라는 조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운뎃점을 사용한 '예산안·결산'에서 '예산안 및 결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제167조와 동일함) 2.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로서(학생회칙 제51조), 본회 회칙에 따라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할 수 있음. 나. 중앙운영위원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구성원, 부총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됨.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음이 당연함. 다. 기층기구의 추가경정예산안, 선집행예산안, 사후승인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
----------------	---

라. 이처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학생회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며 전학대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후 략>

위와 같이 학생회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사업계획, 결산 및 사업보고를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학생회칙 제168조제4항처럼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사전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보고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아니하고 보고로 대체할 경우에는 전학대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음.

심의안건 제2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재정운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로 하고, “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예산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준용한다.</u>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 	<p>제15조(예산안 비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적용한다.</u>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예산안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예산안 비율)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준용한다.</u>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매 반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	제15조(예산안 비율) 1. 대항목 비율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하반기의 경우 당해년도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u>적용한다.</u> 2.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u> 3.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u>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u>
목적 및 경위	<p>1. 정확한 표현 사용</p> <p>가.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적용'은 특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함.</p> <p>나.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대항목 비율은 수정할 수 없고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적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됨.</p> <p>2. 경직된 예산안 심의 개편</p> <p>가. 현행 규정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매 반기 초'라는 제약을 규정하여 예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집행조정위원회,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이 사전에 진행될 수 없도록 함.</p>

나. 이를 개정하여 시기적 제약을 해소하고, 무조건 반기 시작 이후에만 예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집행조정위원회,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개편하고자 함.

3. 권한과 역할의 정립

집행조정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만, 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에서 위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별 규정에서 이를 정립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